

「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안전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안전건설과장 장근용)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주체는 지역본부장이므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평가단원 보험 가입과 관련 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